

2000. 2. 23

제93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의 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제안사유

- 대통령령 제16,672호 ('99. 12. 31)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1조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월 350,000원”을 “월 550,000원”으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회기수당 지급) 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한다.
- 제6조 제2항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 제7조 중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672호 , '99.12.31)

● 검토의견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제목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제①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제②항에서 회기 중 회의 출석 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인상 개정되었으므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인상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